붙임 2 변경되는 제도 비교표

구 분		현 행	11.24일 이후
1회용 품목	대상 업종		
종이컵	식품접객업①, 집단급식소②	-	매장 내 사용금지
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	식품접객업, 집단급식소	-	매장 내 사용금지
비닐봉투	종합소매업③ 등	무상판매 금지	사용금지
	음식점, 주점업	-	무상판매 금지
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	체육시설④	무상판매 금지	사용금지
우산비닐	대규모점포⑤	-	사용금지

※ 대상 업종별 매장 예시

① 식품접객업 : 음식점, 커피 전문점, 패스트푸드점 등

② 집단급식소 : 학교, 회사,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(1회 50명 이상)

③ 종합소매업 : 편의점, 면세점, 슈퍼마켓(165m^2 미만) 등

④ 체육시설 : 운동장, 체육관, 종합체육시설 등

⑤ 대규모점포 : 백화점, 대형마트, 복합쇼핑몰 등